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대상자)

- ① 본 기관 이용자는 가정방문 급여제공 대상자로 한다.
- ②이용대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수급자로 정한다.
 - 1. 장기요양인정 1~4등급 수급자
 - 2. 5등급 수급자, 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요원(방문요양과정의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방문요양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말한다)에 의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제공

제4조 (이용 대상자 모집방법)

- ①이용자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상 각종 사이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 ②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경로당, 일선 행정조직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 ③지역단위 각종 행사, 생활정보지, 홍보전단, 홍보 현수막,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④기타 시설 종사자, 지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모집하되, 어떤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계약방법)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받은 약관)로서 체결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기관(요양요원)의 의무

-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1.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지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⑤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하여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급여 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③월 이용료는 예시 정한 수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만큼 산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④방문요양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2.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⑤ 방문목욕 급여는 차량 내 목욕급여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한다.

⑥ 방문 간호는 법에서 정한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의 제공을 말한다

제9조 (급여제공기준)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양치,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3. 정서 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 (방문요양 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방문요양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후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한 급여 제공 지도

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보관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

8.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 할 수 없다

제10조 (서비스제공 시 유의사항)

요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1회 최대 3시간 이내(1~2등급의 경우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1일 3회 방문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심야(22~06시)와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18조 가-2의 수가를 월 20회로 산정한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부부이면서 65세 이상일 경우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공단이 인정한 경우 고시 제18조 가-3 수가를 일수와 관계없이 매일 인정한다

제11조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고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② 본인 일부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경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2025년 기준)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나.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

방문당 시간 / 수가(원) / 본인부담금/15% (원)

30분	16,940	2,541
60분	24,580	3,687
90분	33,120	4,968
120분	42,160	6,324
150분	49,160	7,374
180분	55,350	8,303
210분	61,670	9,251
240분	68,030	10,205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라.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수가한도 외의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제공가능하나,
그 외 실비는 비급여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내용 변경사항 안내 및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수급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고시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